

단과대학 운영규정

(제정 2009. 3. 1.)
(전부개정 및 제명변경 2018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각 단과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및 학과의 발전계획 수립 및 특성화 추진
2. 대학 및 학과의 예산 편성 및 운영
3. 대학 및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4. 대학 및 학과의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
5. 대학 및 학과의 교원 인사
6. 그 밖에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학장) ①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겸보한다.

②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학장은 당해 대학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
제4조(행정인력) 대학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① 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필요시 입시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, 취업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 소속 학과 수의 2배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

③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9.6.25.>

1. 대학 발전계획
2. 대학 입시활동
3. 학문기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4. 강의 및 교육 평가
5. 대학 취업활동
6. 재정지원금의 활용 방안
7. 그 밖에 학장이 부의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인사위원회

제9조(설치)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임교원 신규채용, 승진 임용, 전보,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6.25., 2024.3.1.>
2. 강사 및 비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<신설 2024.3.1.>
3. 교원 연구년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3.1.>
4. 우수교육자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3.1.>
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4.3.1.>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.

제5장 삭 제

[본장삭제] 2019.12.20.]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